

4-7

중소기업 **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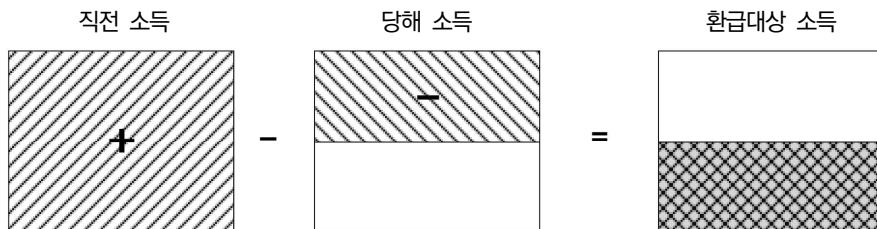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(소득세) 환급

▶ 지원 대상

- 법인세(소득세)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(소득세)를 신고한 중소기업

▶ 지원 내용

-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(소득세) 한도 내에서 환급
-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환급



▶ 절차 및 제출서류

- 법인세(소득세)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(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)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▶ 관련 법령

- 법인세법 제72조, 시행령 제110조
- 소득세법 제85조의2, 시행령 제149조의2

▶ 용어 해설

- 결손금 :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

▶ 적용 사례

● 기업현황(A법인-중소기업)

-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: 2014.1.1
- ② 2022년(제9기) 각사업연도소득금액(△결손금) : △50,000,000
- ③ 2021년(제8기) 법인세 신고내용
 - Ⓐ 과세표준 : 120,000,000
 - Ⓑ 산출세액 : 12,000,000
 - Ⓒ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: 8,000,000

● A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?

- ① 소급공제로 인한 2021년 산출세액의 감소액

$$2021년 산출세액 - \{(2021년 과세표준 - 소급공제 결손금) \times 2021년 법인세율\}$$

$$= 12,000,000 - \{(120,000,000 - 50,000,000) \times 10\%$$

$$= 5,000,000$$
- ② 2022년 환급한도액 : $12,000,000 - 8,000,000 = 4,000,000$
- ③ 2022년 환급신청액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 = 4,000,000$